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0,610,000	12,018,300
일반회계	351,700,000	10,551,000
특별회계	48,910,000	1,467,300
공기업특별회계	24,555,375	736,66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555,375	736,661
기타특별회계	24,354,625	730,639
의료급여기금	1,054,000	31,62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1,303,096	39,093
주택관리사업	165,000	4,95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3,935,900	118,077
치수사업	1,965,112	58,953
수질개선	15,301,792	459,05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461,509	13,845
기반시설부담금	168,216	5,04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없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474,09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대규모 피해로 예비비 부족시)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